

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약관 목차

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 조 목적

제 2 조 용어의 정의

제 2 관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

제 3 조 “일반계정지급방식”에 관한 사항

제 4 조 “특별계정지급방식”에 관한 사항

제 5 조 특약의 적용

제 6 조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의 변경

제 7 조 보험료의 자동계약대출

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8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

제 4 관 기타사항 등

제 9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약관

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 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미 체결된 변액보험 계약(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료가 자동대출납입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- 가. 계약자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나. 피보험자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다. 보험증권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
2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
- 가. 보험기간: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- 나. 영업일: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, 토요일,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.

제 2 관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

제 3 조 ["일반계정지급방식"에 관한 사항]

- (1) 일반계정지급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 졌을 경우,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합니다.
- (2) 제 1 항의 경우 회사가 해당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,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4 조 ["특별계정지급방식"에 관한 사항]

- (1) 특별계정지급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, 보험계약대출금액은 「대출신청일+제 2 영업일」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「대출신청일+ 제 2 영업일」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지급됩니다.
- (2) 제 1 항의 경우, 해당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이 특약의 「보험계약대출이율-1.5%」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하며,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에 포함됩니다. 다만, 계약자가

특별계정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(다만, 1.5%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)은 상환일부터 제 2 영업일동안 “주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”로 적립한 후 「상환일+ 제 2 영업일」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「상환일+ 제 2 영업일」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고 해당 금액을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.

- (3)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제 2 항의 표준이율은 “주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”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.

제 5 조 [특약의 적용]

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관련 약관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지급방식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“일반계정지급방식” 또는 “특별계정지급방식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 다만, 계약자는 “일반계정지급방식”과 “특별계정지급방식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.

제 6 조 [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의 변경]

- (1) 계약자가 선택한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후 지급방식”이라합니다) 외에 다른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전 지급방식”이라 합니다)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잔액이 있는 경우, 계약자는 변경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(2)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,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변경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[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]

이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을 주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8 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- (1)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(2)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제 4 관 기타사항 등

제 9 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